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 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

의 안 번 호	2728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 동북권 및 경기 북부권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등에 공동협력하고자 서울시 · 의정부시 · 노원구가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2020. 3. 13.)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 노원구와 의정부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본 협약에는 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인 의정부시에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 의정부시 및 노원구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약개요

- 협 약 명: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 협약당사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부시
- 목 적: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2020. 3. 13.)을 바탕으로 상생발전 지원에 대해 필요사항을 정함.

○ 협력사업 개요

1) 도봉면허시험장(노원구 상계동 807-1 일원) 이전

- 이 전 지: 의정부시 장암동 254-4 일원(60,425㎡)
-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 사업기간: '20. 3. ~ '28년(예정)

2) 주민편익시설 조성 지원

- 내 용: 서울시와 노원구가 이전지 인근 주민편익시설 조성비용 지원
- 조성대상: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에 조성하는 공공시설 등 서울시·노원구와 합의하여 의정부시가 지정하는 사업

3) 장암역환승주차장 매각

- 대 상 지: 장암역 환승주차장(의정부시 장암동 159번지 일대)
- 매각대상: 서울시 소유 토지 지분(장암동 159, 164-1)
- 내 용: 서울시 소유 환승주차장 토지를 매각(서울시→의정부시)하여 의정부시의 환승주차장 개발 지원

4) 행정구역 조정(수락리버시티 1,2단지) 상호 협력

○ 협약기간: 서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 발생

나. 추진경과

- '20. 3.13. 기본협약 체결
- '20. 3.26. 기본협약 후속 실행계획 수립(시장방침 제62호)
- '20. 4.29. 서울특별시의회 동의(기본협약)
- '20. 4.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20.12.29. 이전예정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람공고

다. 주요내용

○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사항

1) 주민편익시설 조성 지원

- (지원주체 및 대상) 서울시·노원구 또는 사업시행자→ 의정부시
- (지원내용)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조성 지원(지원금액 500억원: 서울시 350억원, 노원구 150억원 분담)
- (지원시기) 단계별 지원(이전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일 30%,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20%, 착공일 50%)

2)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 개발 지원

- (지원주체 및 대상) 서울시→ 의정부시
- (지원내용)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의 개발에 필요한 서울시 소유 토지를 의정부시에 매각(「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절차 이행 완료 후 매각)
- (지원시기) 의정부시가 환승주차장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토지 지분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 협약당사자별 역할(상호의무)

1) 서울특별시·노원구

- 주민편익시설 조성비 적기 지원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협의 등 필요 행정절차 이행
- 의정부시의 환승주차장 개발 지원(서울시 소유 환승주차장 토지를 의정부시에 매각)
- 행정구역 경계조정 상호 협력

2) 의정부시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실시계획

- 인가고시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 시 환승주차장 기능 유지
 - 주민편익시설 조성 사업 성실 공개
 - 행정구역 경계조정 상호 협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협약 체결 이후 이전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22년도 예산) 등 단계별 지원시기에 예산 편성 필요

다. 합 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20. 3.13)

라. 첨부자료

1)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서 1부.

2)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서(안) 1부.

※ 작성자: 동북권사업과 기반조성팀 이영선/고진우(☎ 2133-8287/8293)

서울특별시 · 외정부시 · 노원구 동반 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라 한다)와 외정부시 · 노원구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을 위하여 공동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 · 외정부시 · 노원구가 서울 동북권과 경기 북부권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을 위하여 각 기관 간 업무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 범위) 서울시 · 외정부시 · 노원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외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일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경기도 외정부시' 에서 '서울시 노원구' 로 변경하여 주민불편 해소
2. 외정부시는 '도봉면허시험장' 의 장암역 인근 이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련 행정업무 지원
3. 서울시 · 노원구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익을 고려하여 외정부시의 '호원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
4. 서울시는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의 매각 중 외정부시의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 지원

제3조 (협약 이행) 서울시 · 외정부시 · 노원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제2조 각 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협약의 세부내용 및 이행 절차는 서울시와 외정부시 · 노원구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서울시 · 외정부시 · 노원구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단, 협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본 조에 의한 실무협의회 외 별도의 행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관련사업의 세부 시행방안
2. 관련사업 추진 시 이전에 대한 협의·조정
3. 기타 이 협약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기타사항) ①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본 협약과 관련하여 대외발표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가 그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 후에 실시한다.
- ③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효력) ① 본 협약의 효력은 각 기관이 서명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 ② 본 협약을 폐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폐지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존속된다.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노원구는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의정부시
시장
안병용


노원구
구청장
오승록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 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서(안)

전 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 의정부시 · 노원구는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2020년 3월 13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이하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기본협약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 의정부시 · 노원구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본 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서울시 · 의정부시 · 노원구는 본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사업개요) ① 본 협약은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상생발전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약당사자 간에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 도봉면허시험장은 노원구 상계동 807-1일원 소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말하며, 이전은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이하 “이전지”라 한다)으로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시와 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을 주관한다.

나. 의정부시는 계획수립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및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2. 주민편익시설 조성 :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전지 인근 주민편익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한다.

가. 주민편익시설은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에 조성하는 공공시설 등 서울시·노원구와 합의하여 의정부시가 지정하는 사업을 말하며, 합의서(사용내역, 확인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 전까지 별도로 작성한다.

3. 장암역환승주차장 매각 : 환승주차장은 의정부시 장암동 159번지 일대 장암역 환승주차장을 말하며, 매각은 서울시 소유 토지 지분(장암동 159번지 8,915㎡의 지분 65/100, 장암동 164-1번지 92㎡의 지분 7541.1551/11574)을 의정부시 개발을 위해 의정부시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시는 서울시 소유 환승주차장 토지를 의정부시에 매각하여 의정부시의 환승주차장 개발을 지원한다.

나. 의정부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부지를 매수하고 개발사업을 주관한다.

③ 행정구역 조정(수락리버시티 1, 2단지)은 관련법 등에 따라 상호 협력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협약**”이란 본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의미한다.
2. “**본 사업**”이란 제1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협약 당사자**”라 함은 서울시·노원구와 의정부시를 말한다.
4. “**협약 기간**”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제2호의 “본 사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기준 이자율**”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6. “**사업 주체**”라 함은 도봉면허시험장 부지 개발을 위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시행하는 자로 서울시·노원구를 말하며, 위 협약당사자 이외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도 사업 주체로 포함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봉면허시험장 부지 개발을 위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직접 시행하는 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12항,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국토계획법 이외 타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도 이 협약서 상

사업시행자로 한다.

8. “서면”이라 함은 공문을 말하며, 협약당사자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9. “지원 금액”이라 함은 서울시·노원구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을 위해 제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

제3조(지원의 내용) 서울시·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정부시에 지원한다.

1.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을 위해 제1조제2항제2호의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금 500억원으로 한다.

가. 제1항의 “지원 금액” 중 서울시는 350억원, 노원구는 150억원을 분담하며, 의정부시는 “지원 금액” 외 “사업 주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추가 요구할 수 없다.

2.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의 개발에 필요한 서울시 소유 토지를 의정부시에 매각한다.

제4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서울시·노원구는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 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금액”의 30%를 의정부시에 지원한다.

② 사업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금액”의 20%를 지원하고, 착공시 30일 이내에 잔여분 50%를 지원한다.

③ 서울시는 의정부시가 환승주차장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토지 지분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절차 이행 완료 후 매각한다.

제3장 상생 협력

제5조(상호 의무)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지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본 협약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등 제반 절차를 상호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지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원활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의정부시는 장암역환승주차장의 서울시 지분 매각이 환승주차장 기능 유지 조건임을 양지하고, 향후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와 협의한다.

3. 의정부시는 주민편익시설 조성 사업을 서울시·노원구에 성실히 공개하고, 서울시·노원구는 조성비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4. 서울시·노원구는 의회동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의 유관기관 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5. 행정구역 경계조정(수락리버시티 1,2단지)을 위해 관련법 등에 따라 상호 협력한다.

제4장 위험의 부담

제6조(위험배분의 원칙)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의정부시의 귀책사유) 다음의 사유들은 의정부시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며, “본 협약” 전체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행정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경우

2.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허가권자의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 또는 지체하는 경우

3. “본 협약” 체결 이후에 의정부시 정책결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 무산 및 주민, 의회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인해 본 협약에서 정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본 협약” 체결 이후에 제3조에서 정한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금액”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단, “지원 금액” 외 추가로 “사업주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도 용어에 상관없이 “지원 금액”의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서울시·노원구의 귀책사유) 다음의 사유들은 서울시·노원구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며, “본 협약” 전체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제3조에서 정한 “지원 금액”보다 작은 규모로 지원 금액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2. 제4조에서 정한 지원의 방법 및 시기에 따라 “지원 금액”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경우
3. “본 협약” 체결 이후에 서울시·노원구 정책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이전 사업이 무산될 경우
4.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3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9조(불가항력 사유) 다음의 사유들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되며, “본 협약” 전체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국가신용도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환경의 변화 및 문화재 발굴 등으로 본 사업 이행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 전쟁, 폭동 등 이에 준하는 사유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제5장 협약의 종료

제10조(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본 협약”은 협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된다.

제11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서울시·노원구에 의한 해지 - 제8조에 정한 의정부시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노원구는 본조에 따라 의정부시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의정부시에 의한 해지 - 제9조에 정한 서울시·노원구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정부시는 본조에 따라 서울시·노원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 제10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 당사자”는 본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조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⑤ 본조에 따라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 당사자”는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보함에 있어,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해지사유발생의 통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제12조(해지시 지급금의 결정 및 지급) ① 협약 당사자는 해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기투입된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해지 시 지급금을 정한다.

1. 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지급금(지급일로부터 반환일까지 ‘기준이자율’에 따라 산정된 이자 포함한다)을 서울시·노원구에 반환하고, 제3조에 따른 기지급금을 서울시·노원구에 반환한다.

2. 제8조에 따른 서울시·노원구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상호 인정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지급금은 의정부시에 귀속된다.

3. 제9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액” 중 기지급금액을 서울시·노원구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 지급금을 산정하며, 그 비용은 “협약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③ 해지시 지급금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3조(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른다.

④ 의정부시는 본조에 따라 산정된 해지시 지급금(해지일부터 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에 따라 산정된 이자를 포함한다)을 해지일이 속한 연도의 익년도 1월 31일까지 서울시·노원구에 지급한다.

제6장 분쟁의 해결

제13조(분쟁의 해결) ①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협약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한다.

④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제7장 기타 사항

제14조(지연 이자) “본 협약”상 당사자가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본 협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기준 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 및 동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협약 당사자”간 의견이 다를 경우 상호 합의하여 해석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협약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협약 당사자” 간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공증하도록 한다.

③ 당사자간 합의 하에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 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의정부시 주민편익시설 조성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

제3조(지원의 내용) 서울시·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정부시에 지원한다.

1.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을 위해 제1조제2항제2호의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금 500억원으로 한다.
- 가. 제1항의 “지원 금액” 중 서울시는 350억원, 노원구는 150억원을 분담하며, 의정부시는 “지원 금액” 외 “사업 주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추가 요구할 수 없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의정부시 주민편익시설 조성 지원 금액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세출 소계(b)	150	100	0	250	0	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시비	100	0	0	0	0	100
구비	50	0	0	0	0	50
기타(사업시행자)	0	100	0	250	0	350
합계	150	100	0	250	0	500

5. 덧붙이는 의견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해 지원협약 체결을 통한 이전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 조속 이행이 필요하므로 사업시행자 지정 전 의정부시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 금액 선투입이 불가피함.

6. 작성자 :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이영선(02-2133-8287)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시비	구비	기타	시비	구비	기타	시비	구비	기타	시비	구비	기타	시비	구비	기타	
의정부시 지원 금액	100	50	0	0	0	100	0	0	0	0	0	250	0	0	0	500